

코로나-19 관련 고사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

<코로나-19 관련 고사중 출결 처리 및 결시생 인정점 처리 기준 안내>

단,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 악화에 따른 휴교, 원격수업 등으로 계획한(예정된) 학생평가(1차고사, 2차 고사, 수행평가)의 일부를 실시하지 못해 부득이 **평가의 일부만으로 1학기 성적을 산출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**이 발생할 경우 1차 고사는 2차 고사와 수행평가로 대체할 수 있고 또한 2차 고사를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2차 고사는 1차 고사나 수행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모든 평가에 최선을 다하여 응시하도록 해야 함.

○ 정기고사 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시험을 연기한다.

□ 코로나19로 인한 ‘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’방안은 교과별 평가규정의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르고 인정점 비율은 ‘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’의 인정점 비율에 따른다.

□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

※ 출결과 성적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.

[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]

대상	등교중지 기간	출결처리 등	인정점
확진학생	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의사학생	14일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조사대상 유증상학생	14일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자가격리학생	14일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	가족(동거인)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유증상학생	증상발현* 후 3~4일 *증상발현 즉시 선별 진료소 방문 및 진단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
-뒤면에 계속-

[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]

대상	조건	출결처리 등	인정점
고위험군학생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출석인정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100%
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관심', '주의'	○질병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80%
기타결석 (감염 우려)	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'심각', '경계'	○기타 결석 ○별도 시험실 미제공	기준점수의 70%
미인정 결석	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	미인정 결석	0점

※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.

◆ 기준점수 산출 방법은 COVID-19 이전에 마련한 전주동중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.

1.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2.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이때 최종 인정점 산출방법은 '평균점수 비율(전입생 제외)'로 한다.
3.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기준점수로 활용한다.
 - 1순위: 이전 학기내 동일교과의 성적
 - 2순위: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
 ※ 이전 학기내의 성적 활용시 1, 2차고사 성적 중 선택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정함
4. 가. 1,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나머지 응시 과목의 지필고사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.
 - 나. 전 과목 결시로 인하여 기준점이 없는 경우는 해당과목의 전체 학생 성적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여 결시 사유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

◆ '평균점수 비율(전입생 제외)'을 활용한 최종 인정점 산출 방법

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-계산 방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

2021. 4.

전 주 동 중 학 교 장